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이름	윤제희
전공	영어영문학부
학번	20240088

사형제도의 무용성

영어영문학부/20240088/윤제희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 사형 무용론
 - 3.1. 심리적 공포심의 부재
 - 3.2. 범죄율과 사형제도의 독립적 관계
 - 3.3. 오판 가능성과 그 불가역성
4. 결론
- * 참고문헌

주제문: 사형제도는 현실적인 효과 부재와 오판 시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폐지해야 한다.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구분되고 있다.¹⁾ 그러나 최근 잔혹한 흉악 범죄가 여론에 자주 소개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인 사형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형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거나²⁾ 사형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³⁾을 통해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형집행이 흉악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단순히 강력한 처벌이 강력한 범죄를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형집행은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다. 사형의 효력, 사형수의 인권, 외교 관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흉악범죄자를 향한 분노로 사형집행을 요청하지만, 사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전 더 깊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과연 사형집행 부활이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가 일으키는 문제는 없는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사형의 범죄 감소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사형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형제도가 사회에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고려해 볼 여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의 다양한 문제점 중 사형의 무용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김신혜(2023. 05. 16.),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https://amnesty.or.kr/64809/\(2024. 05. 13.\)](https://amnesty.or.kr/64809/(2024. 05. 13.)).

2) 김해웅(2023. 07. 24.), 「'신림동 칼부림' 피해 유족 "가해자 사형시켜 달라" 국민청원」, 일요시사,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278\(2024. 05. 13.\)](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278(2024. 05. 13.)).

3) 기정호(2024. 03. 07.), 「홍철호 후보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 법치주의 확립 힘쓰겠다"」, 김포신문,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6\(2024. 05. 13.\)](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6(2024. 05. 13.)).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30년 넘게 수감 중인 사형수도 있다.⁴⁾ 하지만 사형집행을 실행한 지 오래되었을 뿐 형법 제66조⁵⁾에 사형과 그 형벌이 명시되어 있고 2015년에도 대구 중년 부부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⁶⁾ 즉,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언제든지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는 살인, 성범죄, 강도, 방화 등이 있다.⁷⁾ 이 범죄 중 사형을 시작한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집행된 사형 920건 중 562건이 살인 범죄였다.⁸⁾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가 살인인 만큼 사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는 살인이었다.

3. 사형 무용론

3.1. 심리적 공포심의 부재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두려워함으로써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사형수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는 일반적인 범죄자와 다르게 분류하고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나 사기범은 엄중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위 안의 사고를 지냈다. 따라서 보통의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그 형이 무거울수록 범행을 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사형의 대상인 살인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대부분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다. 흉악범죄자 대다수는 범행을 저지를 때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이며 범행 후에는 체포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⁹⁾ 즉, 그들은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악범죄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계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사형은 그들의 범행을 멈출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하여 형의 무게를 늘린다고 해서 이의 대상인 흉악범죄자들이 겁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는다.

4) 박선정·한수현(2023. 11. 13.), 「사형수 55명,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3055\(2024. 05. 15.\)](https://www.lawtimes.co.kr/news/193055(2024. 05. 15.)).

5) 법제처 편(2024. 02. 09.), 「형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Seq=253323&efYd=20240209#J66:0\(2024. 05. 13.\)](https://www.law.go.kr/lsInfoP.do?lsSeq=253323&efYd=20240209#J66:0(2024. 05. 13.)).

6) 연합뉴스TV(2015. 08. 28.), <"딸과 헤어져라" 전 여친부모 살해범...사형확정>,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RI_bFe_mfo\(2024. 05. 13.\)](https://www.youtube.com/watch?v=hRI_bFe_mfo(2024. 05. 13.)).

7) 김한균(2017), 「사형의 양형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54, 대검찰청, 2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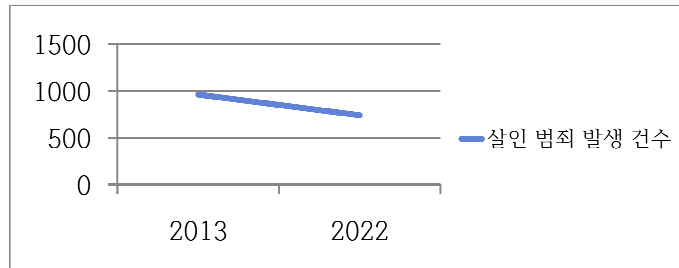
8) 차대운(2009. 10. 11.), 「건국이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091010070800004\(2024. 05. 20.\)](https://www.yna.co.kr/view/AKR20091010070800004(2024. 05. 20.)).

9) 김대근(2022. 07. 11.),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The Joong 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796\(2024. 05. 1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796(2024. 05. 14.)).

3.2. 범죄율과 사형제도의 독립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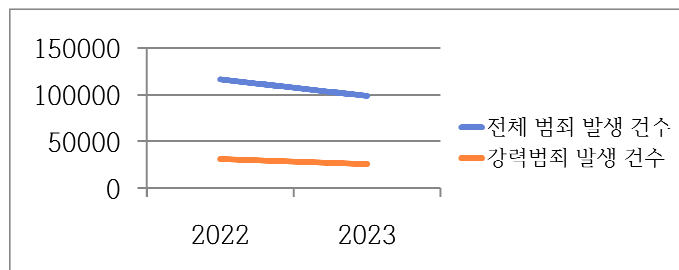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엄중한 처벌인 만큼 대체로 살인 이상의 범죄에 내려진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일어난 대한민국의 살인 범죄를 보았을 때 살인은 23.0% 감소하였다.¹⁰⁾ 살인 범죄율이 하락한 기간인 2013년부터 2022년은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인정된 기간이다. 즉,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살인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표1> - 대한민국 살인 범죄 발생 건수 (위의 책을 참고해 만든 표)



이런 현상은 사형집행을 멈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2022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카자흐스탄에서도 나타났다.¹¹⁾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 1년 후인 2023년에는 나라의 전체 범죄율이 15.2% 감소했고 강력범죄는 16.5% 하락했다.¹²⁾ 2022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1년간 2023년도까지 강력 범죄율이 하락한 상황이다.

<표2> - 카자흐스탄 전체 범죄 건수와 강력범죄 건수 (위의 기사를 참고해 만든 표)



나라마다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형집행을 정지하거나 폐지하면 대한민국이나 카자흐스탄처럼 범죄율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사형제도와 그 집행의 여부가 범죄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형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인 범죄의 발생은 사형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10)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1쪽.

11) 김현정(2023. 07. 18.), 「'사형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cpbc, [https://news.cpbc.co.kr/article/1110908?division=NAVER\(2024. 05. 15.\)](https://news.cpbc.co.kr/article/1110908?division=NAVER(2024. 05. 15.)).

12) Staff Report(2023. 09. 13.), 「Crime Rate in Kazakhstan Declines by 15.2%」, The Astana Times, [https://astanatimes.com/2023/09/crime-rate-in-kazakhstan-declines-by-15-2/\(2024. 05. 15.\)](https://astanatimes.com/2023/09/crime-rate-in-kazakhstan-declines-by-15-2/(2024. 05. 15.)).

3.3. 오판 가능성과 그 불가역성

오판이란 진실과 판결이 불일치할 때를 말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유죄임에도 무죄가 판결되는 무죄오판과 무죄이지만 유죄로 판결되는 유죄오판이 있다.¹³⁾ 특히나 유죄오판의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잘못된 판결로 무죄인 사람이 사형까지 치르게 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법조인들 역시 오판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변호사의 85.7%와 법관의 69.9%가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동의했다.¹⁴⁾ 판결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 대다수가 그 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판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

오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단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오용과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있다.¹⁵⁾ 예를 들어 1993년 김 순경의 살인 누명은 허위 진술로 인해 오판을 받은 사례이다. 김 순경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동료 경찰들의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범행을 인정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¹⁶⁾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로 허위 자백을 하여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오판도 자백의 강요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 체포와 감금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했고 이에 따라 20년간 연쇄살인범으로 수용되었다.¹⁷⁾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의 압박과 강요가 이춘재 사건 오판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정치적 세력이나 상하관계도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1950년 현재의 한강대교가 붕괴하는 사건을 일으킨 최창식 대령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최창식 대령은 소장의 명령을 따랐던 걸로 밝혀져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¹⁸⁾ 당시 윗사람의 명령으로 인해 아랫사람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사건이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진술의 신뢰성 평가나 CCTV 설치를 자주 생략하는데 이 역시 오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¹⁹⁾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사가 더욱 정밀해지고 판결이 정확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김 순경, 이춘재, 한강대교 붕괴 사건으로 보았을 때 오판의 원인은 부족한 과학기술이 아니었다. 증거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장비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요소들이 오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력의 강요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창식 대령 사건 외에도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를 찾아보았다. 1959년 조봉암 사형²⁰⁾, 1975년 인혁당 8명 사형²¹⁾, 1961년 조용수 사형²²⁾,

13) 이정원·이종섭(2013), 「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한국형사정책학회, 33쪽.

14) 이정열(2003),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0쪽.

15) 이창훈·David T. Johnson(2017), 「'오판'의 개념 정립 및 오판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향」, 『한국범죄학』 11-1, 대한범죄학회, 26쪽.

16) 박태경(1993. 12. 09.), 「김 순경, 살인누명 1년」,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62755_30684.html(2024. 0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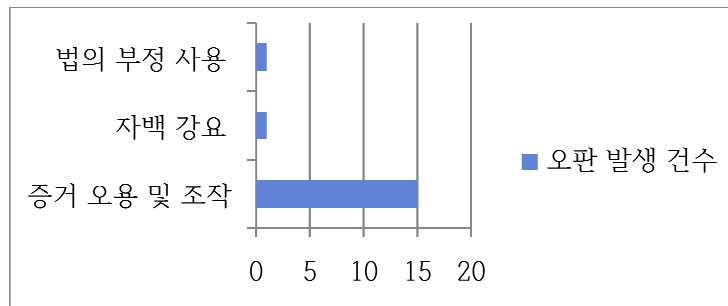
17) 이민선(2020. 12. 17.), 「'이춘재 누명' 윤성여 공식 무죄... 법원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 못해" 사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3317(2024. 05. 16.).

18) 보존서비스과(2021. 12. 06.), 「[전시 기록 이야기 #8] 한강대교의 비극」,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post/2097>(2024. 05. 16.).

19) 이창훈·David T. Johnson(2017), 앞의 논문, 27쪽.

1969년 이수근 사형²³⁾, 1969년 권재혁 사형과 1972년 김규남·박노수 사형²⁴⁾, 1979년 김상회와 진항식 사형²⁵⁾, 1985년 김정인 사형²⁶⁾이 있다. 이 18명의 잘못 판결된 사형수들의 재판 원인을 분석했을 때 증거 오용 및 조작이 15건, 자백 강요가 1건, 법의 부정 사용이 1건이다. 이러한 조작과 부정은 정부와 정권의 힘으로 일어났다. 사형집행에 대한 재판의 원인은 오늘날 과학기술과 수사 장비들이 나아졌다고 하여 고쳐지지 않는다. 증거를 더 완벽하게 보존하고 CCTV의 수가 늘었다고 해서 인간과 권력이 정직해지지 않는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은 수사와 판결의 재판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재판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지는 않는다.

<표3> - 대한민국 재판 사형집행의 원인 (위에서 찾은 사례 참고)



4. 결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사형은 단순히 무거운 처벌이 아닌 여러 문제와 연결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보다 이 제도가 결과하는 효력과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흉악 범죄 사건들이 여론에 많이 알려지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로 인해 흉악 범죄가 멈춘다는 추측은 신빙성이 낮다. 범죄자의 심리를 보았을 때 사형제도는 흉악범죄자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며 심

20) 여기선(2023. 07. 31.), 「[역사속 오늘리뷰] 7월 31일 조봉암 사형 집행», 파이낸셜 리뷰,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8>(2024. 05. 24.).

21) 김인영(2024. 04. 09.), 「[4월9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해외도 충격받았다», Money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40316015017690>(2024. 05. 24.).

22) 장슬기(2023. 12. 20.), 「[연론계 역사 속 오늘] 12월21일, 송건호 별세...민족일보 조용수 사형»,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87>(2024. 05. 24.).

23) 여현호(2017. 09. 27.), 「'위장간첩 조작사건' 이수근 48년 만에 재심받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739.html#csidxb655e62bb9b8dc088d9c081b58ec7ac(2024. 05. 24.).

24) 한홍구(2009. 11. 03.), 「[시론] 권재혁을 아십니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736.html>(2024. 05. 24.).

25) 김당(2017. 01. 15.), 「'유신공주' 박근혜-‘법 기술자’ 김기춘 박정희 ‘장물’만 승계하고 부채는 몰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9921(2024. 05. 24.).

26) 송윤세(2010. 07. 16.),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선고 故김정인씨, 28년만에 무죄»,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344380?sid=102>(2024. 05. 24.).

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중지 후와 카자흐스탄의 사형제도 폐지 후의 살인 범죄율을 통해 사형과 살인 범죄의 발생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사형제도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판 가능성이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판의 원인은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증거를 바꾸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다. 오판의 위험처럼 사형제도가 일으키는 파생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형제도가 범죄에 행하는 효력과 제도의 오판 가능성을 통해 사형제도의 무용성을 설명해 보았다.

사형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였다. 사형제도의 실행과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인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사형제도를 실행했을 때 오판의 불가역성이라는 위험이 따라온다. 확실한 효력이 없는 사형이라는 잔인한 형벌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다. 더군다나 오히려 무고한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사형제도의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는 현실적인 효과의 부재와 오판 시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폐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기정호(2024. 03. 07.), 「홍철호 후보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 법치주의 확립 힘쓰겠다”」, 김포신문,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6>(2024. 05. 13.).
- 김당(2017. 01. 15.), 「'유신공주' 박근혜-‘법 기술자’ 김기춘 박정희 ‘장물’만 승계하고 부채는 몰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9921(2024. 05. 24.).
- 김대근(2022. 07. 11.),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796>(2024. 05. 14.).
- 김신혜(2023. 05. 16.),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https://amnesty.or.kr/64809/>(2024. 05. 13.).
- 김인영(2024. 04. 09.). 「[4월9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해외도 충격받았다」, Money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40316015017690>(2024. 05. 24.).
- 김한균(2017), 「사형의 양형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54, 대검찰청.
- 김해웅(2023. 07. 24.), 「'신림동 칼부림' 피해 유족 “가해자 사형시켜 달라” 국민청원」, 일요시사, <https://v.daum.net/v/20230724094912006>(2024. 05. 13.).
- 김현정(2023. 07. 18.), 「'사형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cpbc, <https://news.cpbc.co.kr/article/1110908?division=NAVER>(2024. 05. 15.).
- 박선정·한수현(2023. 11. 13.), 「사형수 55명,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3055>(2024. 05. 15.).
- 박태경(1993. 12. 09.), 「김 순경, 살인누명 1년」,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62755_30684.html(2024. 05. 16.).
-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제처 편(2024. 02. 09.), 「형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323&efYd=20240209#J66:0>(2024. 05. 13.).
- 보존서비스과(2021. 12. 06.), 「[전시 기록 이야기 #8] 한강대교의 비극」,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post/2097>(2024. 05. 16.).
- 송윤제(2010. 07. 16.),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선고 故김정인씨, 28년만에 무죄」,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344380?sid=102>(2024. 05. 24.).
- 이기선(2023. 07. 31.), 「[역사속 오늘리뷰] 7월 31일 조봉암 사형 집행」, 파이낸셜 리뷰, ht

- 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8(2024. 05. 24.).
- 여현호(2017. 09. 27.), 「'위장간첩 조작사건' 이수근 48년 만에 재심받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739.html#csidxb655e62bb9b8dc088d9c081b58ec7ac(2024. 05. 24.).
- 연합뉴스TV(2015. 08. 28.), <"딸과 헤어져라" 전 여친부모 살해범...사형확정>,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hRl_bFe_mfo(2024. 05. 13.).
- 이민선(2020. 12. 17.), 「'이춘재 누명' 윤성여 공식 무죄... 법원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 못해" 사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3317(2024. 05. 16.).
- 이정열(2004),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1,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원·이종섭(2013), 「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창훈·David T. Johnson(2017), 「'오판'의 개념 정립 및 오판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향」, 『한국범죄학』 18-1, 대한범죄학회.
- 장슬기(2023. 12. 20.), 「[언론계 역사 속 오늘] 12월21일, 송건호 별세...민족일보 조용수 사형」,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87>(2024. 05. 24.).
- 차대운(2009. 10. 11.), 「건국이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091010070800004>(2024. 05. 20.).
- 한홍구(2009. 11. 03.). 「[시론] 권재혁을 아십니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736.html>(2024. 05. 24.).
- Staff Report(2023. 09. 13.), 「Crime Rate in Kazakhstan Declines by 15.2%」, The Astana Times, <https://astanatimes.com/2023/09/crime-rate-in-kazakhstan-declines-by-15-2/>(2024. 05. 15.).

